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98호(2014. 11. 13.)

1. 한·중 FTA 추진 경과

◎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양국 연구 기관 간 민간 공동연구를 거쳐 공동연구보고서(Joint Report) 발표

- 양국 간 FTA 체결로 모든 관세가 완전 철폐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 3.1~3.2%, 중국 0.6%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은 한국이 약 3.0%, 중국은 0.6% 증가 전망
 - 한국의 농수산업 생산은 14.2~14.7% 감소 추정

◎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수행하고 양국의 입장을 병기한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 2008년 6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본 회의 5회와 농업전문가 회의 3회 개최하였으나 주요 쟁점 합의에 실패
 - 한국은 농어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민감품목의 적절한 보호방안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양국 농업이 상호보완 관계이므로 무역을 통해 상생

가능하다며 민감성 보호방안 명시에 반대

- 2010년 5월, 2년여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 협의를 거쳐 '민감분야 보호에 대해 정부 간 사전협의' 할 것을 조건으로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 정부 간 공식협상 개시 결정 전,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상호이해(mutual understanding)와 합의 확립(ways and means for consensus)을 위하여 양측 공식 대표단 간의 추가적인 의견 교환 기회 마련

◎ 2012년 5월까지 정부 간 실무협의 진행 후 한국의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관련 절차 이행을 거쳐 정부 간 공식협상 추진 합의

- 한·중 FTA 공청회(2012년 2월 24일)를 통해 농업부문의 민감성 고려한 점진적 관세 철폐 제안
- 대외경제장관회의(2012년 4월 16일)에서 한·중 FTA 추진 의결

◎ 한·중 통상장관 FTA 협상 개시 선언(2012. 5. 2.)

- 단계별 협상 구조 채택: 민감품목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조율
 - 1단계 모델리티 협상(협상의 기본지침): 상품분야의 민감품목 범위와 관세철폐방식 협의
 - 2단계 본 협상: 1단계 협상 완전 타결 후 개별 품목별 개방 수준과 방식, 각 분야별 협정문 등에 대한 전면적 협의

◎ 한·중 FTA 1단계 협상(2012. 5.~2013. 9.) 결과

- 상품분야 : 품목군 정의(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군)
 - 일반품목군 : 10년 이내 관세 철폐
 - 민감품목군 : 10년 이상 20년 이내 관세 철폐
 - 초민감품목 : 양허제외, TRQ, 부분 인하, 계절관세 등
- 자유화 수준(20년 내 관세 철폐): 전체 품목의 90%(수입액의 85%) 이상
 - 초민감품목은 품목(세번 기준) 수의 10% 이내, 수입액의 15% 이내
- 2013년 11월 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 시작

◎ 한·중 FTA 2단계 협상(2013. 11.~2014. 11.) 타결

-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22개 장(章)으로 세분하고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 합의
 - 농산물은 자유화(발효 후 20년 이내 철폐) 비율 64%로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

2.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 내용

2.1. 양허안 개요

◎ 양허 대상은 2012년 한국표준품목분류(HSK)상 농축산물 1,611개 세번(tariff-line)

- 우리나라 표준품목분류(HSK)에 따른 전체 품목 12,232개 가운데 식품을 포함한 농산물은 13.2%인 1,611개

◎ 농산물 양허 유형은 관세철폐(즉시~20년)와 부분감축, TRQ, 양허제외 등 모두 11가지

- 2013년 9월 1단계 협상에서 일반품목군(10년 이내 철폐),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TRQ, 부분감축, 양허제외)으로 합의. 2단계 협상은 각 품목군에 해당 농산물을 할당하는 과정이었음.
- 일반품목은 즉시철폐와 5년 철폐, 그리고 10년 철폐 3가지. 민감품목은 15년 철폐와 20년 철폐이며, 20년 철폐는 20년 균등 감축과 11년차부터 감축, 그리고 13년차부터 감축으로 구분. 초민감품목은 5년간 10% 감축과 10년간 관세율 130%로 감축, TRQ 조건부 현행 관세 유지, 그리고 양허제외로 구성

◎ 농산물 양허 수준은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 기준 64%(수입액 기준 42%), 양허제외 비율은 34%

- 일반품목은 즉시철폐(13.4%), 5년 철폐(13.0%), 10년 철폐(10.2%).
- 민감품목은 15년 철폐(12.5%), 20년 철폐(14.8%)
- 초민감품목은 부분감축(5년간 1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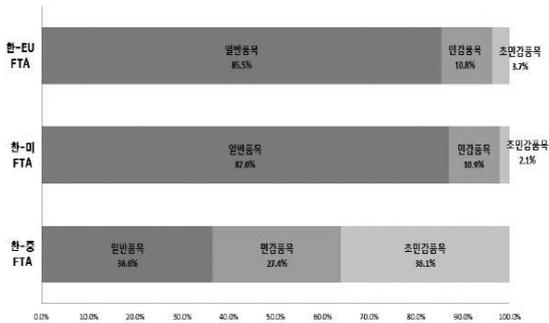
집.중.탐.구.

10년간 130%로 감축: 0.9%), TRQ(0.4%), 양허제외(34%)
 - 기체결 한·미 FTA: 1.1%, 한·EU: 2.8%, 한·칠레: 29%

표 1 | 한·중 FTA 우리나라 농축산물 양허 현황

민감도	양허유형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일반 품목	즉시철폐	216 (13.4)	550 (37.9)	610 (42.1)
	5년 철폐	209 (13.0)	329 (22.7)	295 (20.4)
	10년 철폐	164 (10.2)	384 (26.4)	334 (23.1)
	소계	589 (36.6)	1263 (87.0)	1239 (85.5)
민감 품목	15년 철폐	202 (12.5)	148 (10.2)	146 (10.1)
	20년 철폐	239 (14.8)	10 (0.7)	10 (0.7)
	소계	441 (27.4)	158 (10.9)	156 (10.8)
초민감 품목	TRQ	7 (0.4)	15 (1.0)	14 (1.0)
	부분감축	26 (1.6)		
	양허제외	548 (34.0)	16 (1.1)	40 (2.8)
	소계	581 (36.1)	31 (2.1)	54 (3.7)
총합계		1,611 (100.0)	1,452 (100.0)	1,449 (100.0)

그림 1 | 기체결 FTA와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양허 현황 비교



2.2. 양허안 주요 내용

◎ 주요 신선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양허 대상 1,611개(652개 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고추, 마늘, 양파와 무, 배추,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현재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저울관세할당량(TRQ) 조건부 현행관세율 유지

- 저울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TRQ)을 증량하는 대신 현행 관세율 유지
- 대두(1만 톤), 참깨(2만4천 톤), 고구마전분(5천 톤), 팥(3천 톤), 맥아(1천 톤) 등

◎ 현행 양허세율이 288% 이상 높으면서 사료나 종자 등 국내 산업원료용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은 10년간 관세율 130%로 인하(부분감축)

- 귀리(조분, 플레이크), 밀(조분, 펠리트),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양, 매니옥, 토란 등

◎ 현행 양허세율이 50% 이내로 낮은 편이면서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5년간 관세율을 10% 인하(부분감축)

- 당면, 당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 등
- 김치는 현행세율을 1년간 1%, 혼합조미료는 1년간 10% 각각 인하

◎ 국내 농업에 직접적 영향은 약하지만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은 20년 철폐.

중국산 수입액이 적은 품목은 15년간 철폐

- 한약재, 식물성엑즙, 도라지, 도토리, 기타과실, 비스킷, 양송이(조제 저장), 목이버섯, 잎담배, 꿀련, 죽순, 맥주, 위스키, 고량주, 피넛버터, 건포도, 올리브, 데어리스프레드, 백삼조제품, 백합, 토마토케첩과 소스, 버찌(조제 저장), 커피조제품, 두부, 대나무, 완두(냉동, 건조), 라임, 녹두, 카레, 살구(조제저장), 거위(신선), 고추냉이, 알부민 등은 20년 철폐
- 감귤류 껍질, 박하, 개사료, 배합사료, 토마토 페이스트, 미과, 겨자, 음료베이스, 레몬주스, 코코넛, 호프, 두리안과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은 15년 철폐

◎ 주로 사료용과 증자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관세율이 낮아 일반품목으로 분류. 그 중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5년 또는 10년 철폐, 무관세나 3% 이내의 저율관세 품목들은 즉시철폐

- 국수, 포도주, 꼬냑, 아몬드, 충전용 새싹털, 설탕박 등 박류, 베이커리제품, 기타 파스타,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원두), 초콜릿, 젤라틴, 쇼트닝 등은 10년 철폐
- 물, 멜론종자, 커피(볶음), 아마인유, 오렌지유, 코코아분말, 과일발효주, 캔디, 콜라베이스, 인스턴트면류 등은 5년 철폐
- 박류(전분박, 대두박과 양조박, 면실유박 등), 대두(종자용), 기타 채유종실, 채소종자, 소와 돼지(번식용), 수수(기타), 알팔파, 면(코튼), 섬수모와 생사 등은 즉시철폐

표 2¹ 한·중 FTA에서 품목별 양허 현황

양허유형	새년수	비중(%)	주요 품목	
일반품목	즉시철폐	216	13.4	소(육유/젓소/기타), 오리(기타/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작용), 돈(기타), 가금(기타), 팥(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피(기타), 아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작용), 라드유, 무 종자, 아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5년 철폐	21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탕,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프라켓티, 양조식료,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코냑,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사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쇄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즈, 아몬드(탈각) 등
소계	599	36.6		
민간품목	15년 철폐	21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팥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살랑지장처리/조제장처리/일시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레인),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 두리안(신선), 구아바(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장처리/살랑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팥(원(정제장처리), 커피 크리머, 겨자(겨자(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유/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크림(조제장처리/살랑지장처리/냉동) 등
	11년차	2	0.1	과실건과기타(조제장처리), 기타과실(캔,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약품 등)
	20년 철폐	236	14.6	도라지(신선/냉동), 매나옥(냉동), 테러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살랑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훈장, 향(기타/살랑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소계	441	27.4		
조민간품목	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20% 부분감축(평균)	11	0.7	김치(조제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탈각/조제장처리),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 기타(조제장처리),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장처리)
	130%로 감축	15	0.9	매나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나옥칩(건조), 매나옥펠리트(건조), 밀(멜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일차플레이드/분쇄물/조분/가공품), 안-디오스코에아종(기타), 토란-클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도란-크산토스마종(기타)
양허제외	548	34.0	쌀, 보리(겉보리/쌀보리), 팥(원유 옥수수, 감자(식용/냉동-건조/침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절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배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진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제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오렌지(온주감귤/만다린/멘저린/오렌지), 사과(배도, 키위, 호박, 고구(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엽, 기타가공품) 등	
소계	591	36.1		
총 합계	1,611	100.0		

2.3.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의 특징

◎ 주요 농산물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낮은 수준의 FTA'

- 주요 농축산물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양허유형이 모두 11개로 미국(22개)

이나 EU(21개)에 비해 단순화

- 일반품목은 즉시철폐와 5년 철폐, 10년 철폐, 민감품목은 15년과 20년 철폐(3가지), 초민감품목은 부분감축(2가지)과 TRQ 조건부 현행 관세 유지 및 양허제외
- 주요 품목들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나머지 품목들은 양허 유형이 비교적 단순

◎ 중국의 관심품목 일부는 TRQ 증량이나 부분 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 제공

- TRQ 증량 7개 품목, 5년간 부분감축 11개, 10년간 부분감축 15개

◎ 사료용과 종자용, 가공용 원료 등 일부 농산물에 한해 즉시철폐와 단기간 내 철폐로 양허

- 즉시철폐 216개, 5년 철폐 209개, 10년 철폐 164개

3. 한·중 FTA 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3.1. 한·중 FTA 협정 체결의 의미

◎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대상국이고 우리나라는 중국 제3의 교역대상국임

- 2013년 중국의 한국시장 수출액은 909억 달러로 홍콩을 제외하면 제3의 시장임. 수입액은 1,784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음
- 양국 간 교역액은 미국(5,106억 달러)과 일본(3,078억 달러)에 이어 3위였음

◎ 한·중 양국은 제조업 생산이 수직적 분업구

조를 이루고 있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합적인 관계로서 매년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농수산업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양국 간 FTA 협상은 상호 민감분야인 한국의 농수산업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해 민감성이 반영된 FTA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들이 중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농축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음

-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없이도 매년 증가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 더욱이 최근 중국의 자체 농업기술 진보와 함께 우리나라 농업기술자들의 종자 및 재배기술 전수를 통해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고 있어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품질경쟁력도 향상되고 있음

◎ 중국의 농식품 시장도 FTA 이행에 따라 개방되는 만큼 세계 최대의 인구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도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양허안에 의하면 채소종자와 잼, 젤리 등은 즉시철폐, 딸기(신선), 포도, 냉동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커피(볶음) 등은 10년 철폐
 -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인 김치와 인스턴트면류, 커피조제품 등은 20년 철폐
- 중국 내 고소득 소비계층의 소비성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특히 자국산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한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활용한 고품질 국산 농식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특히 FTA 체결을 계기로 특혜관세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FTA 특혜관세의 필요조건은 바로 원산지 증명 발급이므로 양국 간 FTA 원산지 규정의 품목별 규정(Product Specific Rules: PSR)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 기존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까지 확대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착륙을 위해 발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함

-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대두와 팥, 참깨 등은 물론 부분감축되는 들깨 등 발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필요
- 또한 기존 FTA 대책들의 성과 평가와 효율성

심사를 통한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동안 정부의 FTA 국내 대책 지원금 집행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여 부정 수급과 중복 지급 및 유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한·중 FTA를 계기로 기존 한·칠레 FTA와 한·미 FTA 및 한·EU FTA까지 수립, 시행하던 협정별 국내 대책을 통합하여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특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재해보험과 연계하여 소득안정직불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복성을 줄이고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들도 한·중 FTA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대책에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료용과 종자, 가공용 등 일부 농산물만 관세철폐
- TRQ가 증량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현행 관세율이 낮은 수준

부록 1¹ 한·중/미/EU/호/캐 FTA에서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오리 고기	냉장육(18%), 냉동육(18%)	양허제외	10년/12년	11년/14년	15년/18년
					10년/양허 제외